

#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기업경제과

제정 2024. 8. 5 조례 제2120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1항,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주변지역”이란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.
2. “지원사업”이란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.
3. “시설물”이란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동산과 부동산을 말한다.

**제3조(시설물의 취득)**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(이하 “시설물”이라 한다)은 이천시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시장이 관리한다. 다만, 특정 마을주민만을 위한 시설물은 해당 마을회 소유로 하고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**제4조(시설물의 사용·수익허가 및 관리·운영 위탁)**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하거나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1. 시설물이 위치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
가. 주민단체  
나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
  2.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- ② 지원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

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

단체, 마을회,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법인 및 영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주민에게 사용·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할 수 있으며,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**제5조(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)**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대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방법(제5조 관련)

1. 표시 내용: 영 제19조,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표시한다.

[예] 이 ○○○은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금으로 설치(구입)된 것입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2. 표시 규격: 시설물인 경우에는 가로 40센티미터, 세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규격으로 제작하고, 시설물 외의 경우에는 적당한 규격으로 제작한다.

3. 설치 장소: 시설물인 경우에는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시설물의 현관 또는 입구에 부착하고, 시설물 외의 경우에는 적절한 곳에 부착한다.